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5월 27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 라. 상정일자 :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6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보육정책위원회위원 구성 및 구성비율 변경(안 제6조제2항)
 -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 100분의 45 이상
 - 나)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 100분의 20 이하
 - 다)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 100분의 15 이하
 - 라)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
 - 마)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
- 2)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일부삭제
(안 제7조제1호, 안 제7조제5호, 안 제12조제2항)
 - 가)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나)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이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구성비율이 변경되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이 삭제됨.
- 본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위원회 구성과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요기관인 만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구의회의 의견수렴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6 호
----------	---------

제출연월일 : 2013.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2012. 6. 29.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달라지고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를 동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대상 변경 및 구성비율 신설

- 위원 대상 변경 : 구의회 의원 제외
- 위원 구성비율 신설
 -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일부삭제

-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4.25~5.5, 1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미반영)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구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보육정보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보육전문가</u></p> <p>2. <u>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u></p> <p>3. <u>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u></p> <p>4. <u>관계공무원</u></p> <p>5. <u>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③、④ (생략)</p> <p>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u></p> <p>2. ~ 4. (생략)</p> <p>5. <u>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u></p>	<p>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 63제 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u></p> <p>2. <u>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u></p> <p>3. <u>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u></p> <p>4. <u>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u></p> <p>5. <u>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능) ----- -----.</p> <p>〈삭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육정보센터를 -----

-----.

③ (현행과 같음)